

의안번호	제311호
의결 연월일	2019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9년 10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제2호 개정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'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기준' 개정

## 2. 주요내용
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제2호 '미세먼지 (PM-2.5)'를 '초미세먼지(PM-2.5)'로 변경
-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발령 및 해제기준에 연동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미세먼지”를 “초미세먼지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”를 “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7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별표 2”를 “별표”로 한다.

별표 1을 삭제하고, 별표 2를 별표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조표

현	행	개	정
제2조(정의)	제2조(정의)	제2조(정의)	제2조(정의)
1.(생략)	1.(생략)	1.(생략)	1.(생략)
가.(생략)	가.(생략)	가.(현행과 같음)	가.(현행과 같음)
나. <u>미세먼지</u> (PM-2.5) : 입자의 크기가 2.5마이크로미터( $\mu\text{m}$ ) 이하인 먼지	나. <u>미세먼지</u> (PM-2.5) : 입자의 크기가 2.5마이크로미터( $\mu\text{m}$ ) 이하인 먼지	나. <u>초미세먼지</u> (PM-2.5) : 입자의 크기가 2.5마이크로미터( $\mu\text{m}$ ) 이하인 먼지	나. <u>초미세먼지</u> (PM-2.5) : 입자의 크기가 2.5마이크로미터( $\mu\text{m}$ ) 이하인 먼지
제4조(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)	제4조(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)	제4조(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)	제4조(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)
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<u>별표 1</u> 과 같다.	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<u>별표 1</u> 과 같다.	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<u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</u> 에 따른다.	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<u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</u> 에 따른다.
제6조(경보에 따른 조치)	제6조(경보에 따른 조치)	제6조(경보에 따른 조치)	제6조(경보에 따른 조치)
①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<u>별표 2</u>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①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<u>별표 2</u>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①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<u>별표</u>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①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<u>별표</u>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u>[별표1]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(제4조 관련)</u>	<u>[별표1]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(제4조 관련)</u>	<u>삭제</u>	<u>삭제</u>
<u>[별표2]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(제6조 관련)</u>	<u>[별표2]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(제6조 관련)</u>	<u>[별표]</u>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(제6조 관련)	<u>[별표]</u>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(제6조 관련)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
제1조의3(대기오염도 예측·발표 대상 등)

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·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.

1. 미세먼지(PM-10)
2. 초미세먼지(PM-2.5)
3. 오존(O3)

### 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

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

대상 물질	경보 단계	발령기준	해제기준
미세먼지 (PM-10)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
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초미세먼지 (PM-2.5)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
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오존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

		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12ppm 이상인 때	또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12ppm 미만인 때
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3ppm 이상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12ppm 이상 0.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	중대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5ppm 이상인 때	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3ppm 이상 0.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

비고

1.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또는 PM-2.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2.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,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